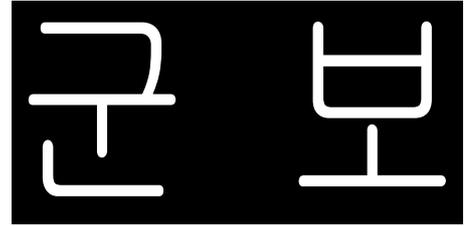


군 정 방 침

-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

- 소통의 화합행정
- 활기찬 지역경제
- 따뜻한 복지사회
- 고품격 문화관광
- 깨끗한 청정환경



선	기관의 장
람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75호 2016. 9. 30.(금)

■ 조 례

-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368호) 3
-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완도군 조례 제2369호) 6
-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완도군 조례 제2370호) 10
-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1호) 26
-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2호) 33
- 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3호) 37
-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4호) 47
-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5호) 51
-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376호) 56
-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377호) 65
-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완도군 조례 제2378호) 70
-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379호) 73
-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380호) 79

■ 규 칙

-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157호) 87
-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완도군 규칙 제1158호) 92

■ 고 시

- 완도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79호) 95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1호) 103
-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2호) 105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3호) 107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4호) 109
- 개간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7호) 111
- 완도군 도로명주소 변경 개별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88호) 113
-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완도군 고시 제2016-90호) 114

■ 공 고

-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393호) 121
-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394호) 124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02호) 128
-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09호) 132
-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10호) 135
- 한정 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12호) 139
-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25호) 142
-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26호) 145
- 한정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27호) 149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432호) 152

회람							
----	--	--	--	--	--	--	--

발 행 : 완도군 / 편집 : 기획예산실 (☎550-5051, FAX 550-5029)

완 도 군



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 공포

1.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2016. 9. 26. 공포**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2.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3.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4.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공포문 1부.
 5.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공포문 1부.
 6. 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 공포문 1부.
 7.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8.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공포문 1부.
 9.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10.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11.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공포문 1부.
 12.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13.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완 도 군



수신자 노, 도, 로

주무관	김성재	법무통계담당	전문희	자치행정과장	이주찬	부군수	차주경
군수	2016. 9. 26. 신우철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112 (2016. 9. 26.) 접수 기획예산실-9403 (2016. 9. 26.)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www.wando.go.kr

전화번호 061-550-5211 팩스번호 061-550-5169 / tjdwoup@korea.kr / 대국민 공개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68호

붙임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출타등”을 “출타 등”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
4.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5. 그 밖에 이장의 직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이장의 임무) ① <u>읍장·면장</u>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복무) ① · ② (생략)</p> <p>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조(복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출타 등 <u>읍장·면장</u>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5조(편의제공) <u>읍·면</u></p>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연수</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사기진작) 1. (현행과 같음)</p> <p>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u>각종 교육 및 연수</u></p> <p>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u>경비</u></p> <p>4.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 <u>패 또는 공로패 수여</u></p> <p>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69호

붙임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0호

붙임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군민”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의사상자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족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사자 가족 및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의로운 군민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정 결정된 의사상자와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등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2.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

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5조(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로운 군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인정신청 청구대상 여부
3.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장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언론, 관계기관·단체, 목격자 등을 통하여 제2조제2호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로운 군민 및 유족 등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결정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

가. 1급부터 2급까지: 7백만원 이하

나. 3급부터 4급까지: 5백만원 이하

다. 5급부터 6급까지: 3백만원 이하

라. 7급부터 9급까지: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②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과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전화:)				
기타					
<p>「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완도군수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고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실 확 인 조 사 서				
구 조 행 위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고내용 확 인 (6하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내용	※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의로운 군민 추천사유				
조 사 확 인	*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p>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완 도 군 수</p>				

[별지 제3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인정결과 통보서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신청인) 귀하

가.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	년 제 차 완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로운 군민 인정 / 불인정 여부		부 상 등 급 (부상자의 경우)	
	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	제 호	위 로 금	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원
		총 보상금	원	

제 호

의 로 운 군 민 증 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 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완도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관계 법령〉

(안 제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안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 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사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등 급	보 상 금
제1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33 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6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6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201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2,91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1호

붙임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1부.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소 또는 거소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 나.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 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사업)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

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책토론)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사, 감사 및 재판 중인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되는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사항
4. 토론 청구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2호

붙임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1부.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3호

붙임 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 1부.

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2.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및 사용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미활용에너지 개발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체, 군민, 관련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폐기물에 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완도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 ③ 군은 학교·군민·시민단체·사업자 등의 연구 및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고 관련 에너지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군은 도서낙도에 거주하는 군민을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를 보편·타당하게 공급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4. 군민은 군의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운영

제8조(설치) 군수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세무회계과장, 환경산림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 (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 제품을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우선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

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각급 학교 제외)]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5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사업자·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낙도 지역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2.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가스 안전시설 사업

제18조(표창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사회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 (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4호

붙임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5조(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

여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단의 인원수는 3명으로 하되,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선발)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평가에 따라 필요인원을 선발한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
3.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위촉) ① 군수는 매년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위촉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최소한의 충족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고나 해설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5호

붙임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1부.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보고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장보고 글로벌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하 “글로벌재단”이라 한다)”이란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글로벌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
2.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영 관련 사업
3. 한상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및 한상 기업인을 위한 행사 관련 사업
4. 장보고 한상 장학기금 조성, 운영 등 관련 사업
5.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글로벌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글로벌재단은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 ① 글로벌재단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글로벌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에 대하여 글로벌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글로벌재단의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글로벌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지방재정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글로벌재단의 정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6호

붙임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이라 함은”을 ““학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인”이라 함은”을 ““성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체입장”이라 함은”을 ““단체입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윤선도원림”이라 함은”을 ““윤선도원림”이란”으로, “분포되어있는”을 “분포되어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규정에”를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7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제8조제3호 중 “6세미만”을 “6세 미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
물등”을 “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목등”을 “수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촬영등”을 “촬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자재등”을 “건축자재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납절차등”을 “수납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전래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징수 및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린이</u>"라 함은 초등학생을 말한다. 2. "<u>학생</u>"이라 함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u>군인</u>"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u>성인</u>"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u>단체입장</u>"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u>관람료</u>"라 함은 윤선도원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7. "<u>윤선도원림</u>"이라 함은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일대에 분포되어있는 세연지, 낙서재, 곡수당 및 동천석실등을 말한다. 	<p>제2조(정의) 다음과 1. "<u>어린이</u>"란 2. "<u>학생</u>"이란 3. "<u>군인</u>"이란 4. "<u>성인</u>"이란 5. "<u>단체입장</u>"이란 6. "<u>관람료</u>"란 7. "<u>윤선도원림</u>"이란 분포되어 있는 </p>

제3조(공개 및 대표시간) ① 윤선도원
림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
개를 제한한다.

② (생략)

제5조(대표 및 수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소에는
별표에서 정한 관람요금표를 붙여 놓
아야 한다.

③ (생략)

제7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
람을 금지한다.

1. · 2. (생략)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
만의 어린이

4. ·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윤선

제3조(공개 및 대표시간) ①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 및 수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무료관람)

.....

.....

1. ~ 8. (현행과 같음)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
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0. (현행 제9조와 같음)

제8조(관람의 금지)

.....

.....

1. · 2. (현행과 같음)

3. 6세 미만..
.....

4. · 5.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도원림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2. (생 략)
- 3. 퇴폐, 유흥,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4. 소장문화재와 건축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
- 5. 토석 및 수목등을 굴취·반출하는 행위

② 운선도원림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옥내부는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협의 또는 양해를 얻은 가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은 운선도원림 보호구역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운선도유적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 2.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 등 특수 업무수행을 위해 진입이 필요한 차량
- 3. 운선도원림 안에 거주한 주민의 생활 필수품, 건축자재등을 운반하기 위해 진입이 필요한 차량

4. (생 략)

④ (생 략)

제11조(관람료의 사용) 관람료 징수금액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운선도원림 보호구역안의 환경정

.....
..... 해서는 아니 된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사용 등
- 4. 시설물 등
- 5. 수목 등

② 보호구역 안

③
차량 이외 해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구역 안
- 2. 촬영 등
- 3. 건축자재 등

4. (생 략)

④ (생 략)

제11조(관람료의 사용)

- 1. (현행과 같음)
- 2. 보호구역 안

<p>화사업 3. ~ 6. (생략)</p>	<p>..... 3. ~ 6. (현행과 같음)</p>
<p>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관람료의 수납절차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2조(준용규정) 수납절차 등</p>

〈관계 법령〉

(안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 <신설 2002.12.3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7호

붙임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12. (생략)</p>	<p>제2조(정의) <u>다음과</u></p> <p>1. ~ 12.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설></u></p>	<p>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2. (현행과 같음)</p> <p>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u>선순위자</u>. 이 경우 <u>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u></p>

〈관계 법령〉

(안 제10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 <신설 2002.12.3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u>100분의 50</u>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8호

붙임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1부.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교 이광사의 얼을 이어받고 동국진체의 예술성과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교 이광사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 선양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원교 이광사의 자료 수집·연구 및 편찬사업
2. 원교 이광사 추모 공모대전
3. 서화 전시회
4. 그 밖에 원교 이광사 선양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신청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사업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념사업회는 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79호

붙임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조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완도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사무의민간위
탁및관리조례」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
.....
.....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완도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관계 법령〉

(안 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 <신설 2002.12.3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제24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조례 제2380호

붙임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를 “제139조에”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임대사업”이라 함은”을 ““임대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을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료”라 함은”을 ““임대료”란”으로, ““임차인”이라 함은”을 ““임차인”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동일기종”을 “같은 기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무전일”을 “휴무 전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이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21조 중 “각종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u>제139조의 규정</u>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제139조에</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임대사업</u>”이라 함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u>임대 농업기계</u>”(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u>임대료</u>”라 함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u>임차인</u>”이라 함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p>제3조(정의) 1. “<u>임대사업</u>”이란 2. “<u>임대 농업기계</u>”(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3. “<u>임대료</u>”란 4. “<u>임차인</u>”이란</p>
<p>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p>	<p>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p>

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임대기준) ① (생략)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신청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는 휴무전일 17시부터 18시에 출고하며, 휴무가 끝나는 다음날 08시부터 09시까지 입고한다.

⑤ (생략)

제9조(임대료) ①·② (생략)

③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임대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1조(임대료의 반환)

1. (생략)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4.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같은 기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휴무 전일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날부터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 감면 등)

.....
.....
..... 별지 제3호서식
.....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료의 반환)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이나
.....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 ① (생략)
- 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 ② (생략)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삭제>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한 차례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등) 각종 위원회

제22조(비치대장)

1. 별지 제4호서식
2. 별지 제5호서식
3. 별지 제6호서식

〈관계 법령〉

(안 제14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칙 공포

1.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6. 9. 13. 공포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규칙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2.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문 1부. 끝.

완 도 군



수신자 노, 도, 로

주무관	김성재	법무통계담당	전문희	자치행정과장	이주찬	부군수	차주경
군수	2016. 9. 13. 신우철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441 (2016. 9. 13.) 접수 기획예산실-9044 (2016. 9. 13.)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www.wando.go.kr

전화번호 061-550-5211 팩스번호 061-550-5169 / tjdwoup@korea.kr / 대국민 공개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규칙 제1157호

붙임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완도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을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이라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재정투·용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심사의”를 “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5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채를 제외한다)”를 “(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행사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50억원”을 “40억원”으로,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행사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신축사업”을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군”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행사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부처간”을 “부처 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투자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후”를 “수립 후”로, “연도중에”를 “연도 중에”로, “있을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회”를 “4회”로, “3월 31일”을 “2월 28일”로, “7월 31일”을 “5월 31일”로, “10월 31일까지,”를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로, “제출일로부터”를 “제출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월 15일”을 “전년도 12월 15일”로,

“5월 10일”을 “3월 15일”로, “8월 10일까지”를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본청 및 신축사업”을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심사완료일로부터”를 “심사완료일부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text{(심사당시 총사업비-500억원)} \times \frac{20}{100} + 150\text{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8조 중 “11월 30일”을 “12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_____

완도군 규칙 제1158호

붙임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권역은 제1권역을 금당면으로 한다.

② 도서 낙도는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제3조(협회의 구성) ①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때마다 회의진행 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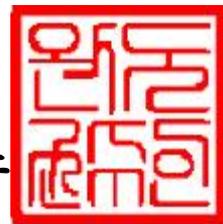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6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김진희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7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내용	<p>1.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p> <p>2. 관계서류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50-56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집니다.</p> <p>2016. 9. 6</p> <p>완 도 군 수</p>			

완도 군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50-56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줍니다.

2016. 9. 6



완 도 군 수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 목	고 시 내 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도읍 군내리 산80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 종류 :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 사업 명칭 : 완도 해든 유원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51,419m ² ○ 사업규모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운동시설</th> <th>휴양시설</th> <th>특수시설</th> <th>관리시설</th> <th>녹지</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151,419</td> <td>58,774</td> <td>23,368</td> <td>24,998</td> <td>17,258</td> <td>27,021</td> </tr> </tbody> </table> ○ 변경 사유 : 미 매입토지 중 일부 토지 제척으로 사업면적 및 세부시설 면적 조정	구분	합계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녹지	면적	151,419	58,774	23,368	24,998	17,258	27,021
구분	합계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녹지									
면적	151,419	58,774	23,368	24,998	17,258	27,021									
4.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1 (송촌동) ○ 성명 : (주)해든D&C 신수교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이후 ○ 준공예정일 : 2018.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1. 총괄편입토지조사

구 분	합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고	
	필지수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적(㎡)		
합계	기정	105	156,984	100.0	67	148,753	38	8,231	감) 5,565㎡ (14필지)
	변경	91	151,419	100.0	55	143,457	36	7,962	
전	기정	21	16,974	10.8	21	16,974	-	-	감) 4,995㎡ (9필지)
	변경	12	11,979	7.9	12	11,979	-	-	
답		7	4,409	2.9	7	4,409			
구거		1	1,653	1.1	-	-	1	1,653	
도로	기정	40	6,879	4.4	3	301	37	6,578	감) 570㎡ (5필지)
	변경	34	6,309	4.2	-	-	35	6,309	
임야		36	127,069	83.9	36	127,069	-	-	

■ 토지사용 동의 현황

구 분	합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소 계	동 의	미동의		
면 적 기 준	면적(㎡)	151,419	144,486	121,579	29,840	7,962
	필지수	91	55	40	15	36
	구성비(%)	-	100.0	84.1	15.9	-
소유자 기 준	소유자수	49	47	30	17	2
	구성비(%)	-	100.0	65.3	34.7	-

■ 토지매입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매 입 현 황		
			소 계	매 입	비 매 입
필지수	91	36	55 (100.0%)	40 (72.7%)	15 (27.3%)

2. 세부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매입현황
	읍(면)	리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완도읍	군내리	101-1	전	502	-	276	-	김성숙	
1	완도읍	군내리	102-1	도	238	238	13	13	완도군	
2	완도읍	군내리	102-3	도	171	171	34	34	완도군	
3	완도읍	군내리	102-5	도	278	278	54	54	완도군	
4	완도읍	군내리	103	전	3,686	3,686	3,686	3,686	송춘희	비매입
5	완도읍	망석리	1074	도	367	367	367	367	국(건설부)	
-	완도읍	망석리	1075	도	9,601	-	1	-	국(건설부)	
6	완도읍	망석리	1108	구	31,435	31,435	1,653	1,653	국(건설부)	
7	완도읍	망석리	22	전	668	668	668	668	임양섭	비매입
-	완도읍	망석리	23	전	747	-	747	-	임재량	
-	완도읍	망석리	25	전	347	-	347	-	최광춘	
-	완도읍	망석리	25-1	전	202	-	202	-	이화선	
-	완도읍	망석리	38	전	526	-	526	-	이영명	
8	완도읍	망석리	43	전	605	605	605	605	(주)해든디앤씨	매입
9	완도읍	망석리	44	전	645	645	645	645	(주)해든디앤씨	매입
10	완도읍	망석리	45	전	1,729	1,729	1,729	1,729	정성자	비매입
-	완도읍	망석리	46	전	766	-	229	-	김인수	
11	완도읍	망석리	46-2	전	264	264	264	264	(주)해든디앤씨	매입
-	완도읍	망석리	53	전	1,382	-	1,382	-	홍인기	
									임공택	
									최병용	
									임순신	
									김문수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매입현황
	읍(면)	리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	완도읍	망석리	54	전	1,250	1,250	1,250	1,250	(주)해튼디앤씨	매입
13	완도읍	망석리	55	전	955	955	955	955	서복윤	비매입
14	완도읍	망석리	56	답	1,306	1,306	976	976	(주)해튼디앤씨	매입
15	완도읍	망석리	57	전	337	337	337	337	(주)해튼디앤씨	매입
16	완도읍	망석리	58	답	1,018	1,018	1,018	1,018	공성옥	비매입
17	완도읍	망석리	59	전	493	493	493	493	곽상호	비매입
18	완도읍	망석리	60	임	496	496	496	496	임찬오	비매입
19	완도읍	망석리	61	답	347	347	347	347	(주)해튼디앤씨	매입
20	완도읍	망석리	62	임	1,146	1,146	1,146	1,146	(주)해튼디앤씨	매입
21	완도읍	망석리	62-1	임	560	560	560	560	(주)해튼디앤씨	매입
22	완도읍	망석리	63	답	1,289	1,289	1,289	1,289	(주)해튼디앤씨	매입
23	완도읍	망석리	64	답	74	74	74	74	(주)해튼디앤씨	매입
24	완도읍	망석리	64-1	도	101	101	101	101	완도군	
25	완도읍	망석리	65	전	562	562	562	562	(주)해튼디앤씨	매입
26	완도읍	망석리	66	답	454	454	454	454	(주)해튼디앤씨	매입
27	완도읍	망석리	66-1	도	210	210	71	71	완도군	
28	완도읍	망석리	67	답	251	251	251	251	임형순	비매입
29	완도읍	망석리	67-1	도	314	314	70	70	완도군	
-	완도읍	망석리	72	전	648	-	648	-	서은파	
-	완도읍	망석리	72-1	도	383	-	268	-	완도군	
-	완도읍	군내리	99-1	전	792	-	638	-	김성숙	
30	완도읍	군내리	99-2	전	1,472	1,472	785	785	최성완	매입
31	완도읍	군내리	산140-4	도	265	265	49	49	완도군	
32	완도읍	군내리	산140-5	도	1,028	1,028	233	233	완도군	
33	완도읍	군내리	산141-1	도	1,120	1,120	108	108	완도군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매입현황
	읍(면)	리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4	완도읍	군내리	산141-2	도	694	694	432	432	완도군	
35	완도읍	군내리	산141-3	임	10,368	10,368	10,368	10,368	이경철	매입
36	완도읍	군내리	산141-4	도	268	268	205	205	완도군	
37	완도읍	군내리	산141-5	도	101	101	98	98	완도군	
38	완도읍	군내리	산141-6	도	53	53	17	17	완도군	
39	완도읍	군내리	산141-7	도	393	393	294	294	완도군	
40	완도읍	군내리	산141-8	도	787	787	261	261	완도군	
41	완도읍	군내리	산142-1	도	1,728	1,728	267	267	완도군	
42	완도읍	군내리	산142-2	임	519	519	519	519	(주)해튼디앤씨	매입
43	완도읍	망석리	산54	임	1,388	1,388	1,388	1,388	(주)해튼디앤씨	매입
44	완도읍	망석리	산55	임	15,669	15,669	15,669	15,669	(주)해튼디앤씨	매입
45	완도읍	망석리	산58	임	12,892	12,892	12,892	12,892	(주)해튼디앤씨	매입
46	완도읍	망석리	산58-1	임	992	992	992	992	(주)해튼디앤씨	매입
47	완도읍	망석리	산59	임	2,380	2,380	2,380	2,380	(주)해튼디앤씨	매입
48	완도읍	망석리	산60	임	3,769	3,769	3,769	3,769	(주)해튼디앤씨	매입
49	완도읍	망석리	산61	임	8,331	8,331	8,331	8,331	(주)해튼디앤씨	매입
50	완도읍	망석리	산62	임	3,074	3,074	3,074	3,074	(주)해튼디앤씨	매입
51	완도읍	망석리	산63	임	2,013	2,013	2,013	2,013	(주)해튼디앤씨	매입
52	완도읍	망석리	산63-1	도	70	70	70	70	완도군	
53	완도읍	망석리	산64-1	도	2,587	2,587	545	545	완도군	
54	완도읍	망석리	산64-2	임	696	696	696	696	박광호	비매입
									이기범	비매입
									이용범	비매입
55	완도읍	망석리	산68	임	556	556	556	556	전귀계	비매입
56	완도읍	망석리	산68-1	도	322	322	139	139	완도군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매입현황
	읍(면)	리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7	완도읍	망석리	산68-2	도	114	114	114	114	완도군	
58	완도읍	망석리	산69	임	1,884	1,884	1,884	1,884	임수량	매입
59	완도읍	망석리	산70-5	도	1,944	1,944	938	938	완도군	
60	완도읍	망석리	산70-6	임	1,407	1,407	1,407	1,407	(주)해튼디앤씨	매입
61	완도읍	망석리	산70-7	도	119	119	119	119	완도군	
62	완도읍	군내리	산74	임	5,101	5,101	2,147	2,147	(주)해튼디앤씨	매입
63	완도읍	군내리	산75	임	1,388	1,388	1,388	1,388	추귀종	비매입
64	완도읍	군내리	산76	임	3,868	3,868	3,868	3,868	(주)해튼디앤씨	매입
65	완도읍	군내리	산77-1	임	5,058	5,058	2,404	2,404	최성완	매입
66	완도읍	군내리	산78	임	7,438	7,438	7,438	7,438	(주)해튼디앤씨	매입
67	완도읍	군내리	산79-1	임	6,347	6,347	6,347	6,347	(주)해튼디앤씨	매입
68	완도읍	군내리	산79-2	임	5,645	5,645	5,645	5,645	송춘희	비매입
69	완도읍	군내리	산79-4	임	793	793	793	793	송춘희	비매입
70	완도읍	군내리	산80	임	4,760	4,760	4,760	4,760	(주)해튼디앤씨	매입
71	완도읍	군내리	산81	임	6,446	6,446	6,446	6,446	(주)해튼디앤씨	매입
72	완도읍	군내리	산82-1	임	3,004	3,004	1,617	1,617	신홍순	비매입
									고영엽	비매입
									고덕희	비매입
73	완도읍	군내리	산82-2	도	99	99	15	15	완도군	
74	완도읍	군내리	산82-3	도	130	130	48	48	완도군	
75	완도읍	군내리	산82-4	도	53	53	20	20	완도군	
76	완도읍	군내리	산84-10	도	100	100	100	100	완도군	
77	완도읍	군내리	산84-11	도	927	927	131	131	완도군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매입현황
	읍(면)	리	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8	완도읍	군내리	산84-13	도	1,066	1,066	88	88	완도군	
79	완도읍	군내리	산84-2	도	992	992	357	357	완도군	
80	완도읍	군내리	산84-3	임	4,284	4,284	1,887	1,887	최종문	비매입
81	완도읍	군내리	산84-7	도	18	18	18	18	완도군	
82	완도읍	군내리	산84-8	도	427	427	123	123	완도군	
83	완도읍	군내리	산85	임	2,975	2,975	2,975	2,975	(주)해튼디앤씨	매입
84	완도읍	군내리	산86	임	2,281	2,281	2,281	2,281	(주)해튼디앤씨	매입
85	완도읍	군내리	산87	임	3,669	3,669	3,669	3,669	(주)해튼디앤씨	매입
86	완도읍	군내리	산88	임	2,281	2,281	2,281	2,281	(주)해튼디앤씨	매입
87	완도읍	군내리	산89-1	임	1,854	1,854	1,854	1,854	(주)해튼디앤씨	매입
-	완도읍	군내리	산89-2	도	298	-	221	-	임영규	
-	완도읍	군내리	산89-4	도	121	-	38	-	임영규	
88	완도읍	군내리	산89-5	도	30	30	30	30	완도군	
89	완도읍	군내리	산90-12	도	819	819	725	725	완도군	
-	완도읍	군내리	산90-2	도	992	-	42	-	이기지	-
90	완도읍	군내리	산90-3	임	1,129	1,129	1,129	1,129	(주)해튼디앤씨	매입
91	완도읍	군내리	산90-7	도	84	84	55	55	완도군	
총				105 필지	220,625	203,318	156,984	151,419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5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5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사항 (면적 및 기간)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허 가 기 간	피 허가자		허가 번호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01 -124	보길면 부황리 580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240.0	2016. 6. 20. 2021. 6. 19.	완도군 노화읍	김 * 철	2016 -101	2011. 6. 20. 2016. 6. 19.	2016. 6. 20. 2021. 6. 19.
2001 -215	노화읍 등산리 948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46.0	2016. 9. 18. 2021. 9. 17.	완도군 노화읍	천 * 숙	2016 -102	2011. 9. 18. 2016. 9. 17.	2016. 9. 18. 2021. 9. 17.
2001 -187	노화읍 고막리 712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120.0	2016. 8. 22. 2021. 8. 21.	완도군 노화읍	이 * 규	2016 -103	2011. 8. 22. 2016. 8. 21.	2016. 8. 22. 2021. 8. 21.
2001 -194	노화읍 고막리 산269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0.0	2016. 9. 4. 2021. 9. 3.	완도군 노화읍	김 * 석	2016 -104	2011. 9. 4. 2016. 9. 3.	2016. 9. 4. 2021. 9. 3.
2006 -22	노화읍 동천리 1163-5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112.5	2016. 8. 19. 2021. 8. 18.	완도군 노화읍	이 * 희	2016 -105	2011. 8. 19. 2016. 8. 18.	2016. 8. 19. 2021. 8. 18.
2001 -206	노화읍 고막리 675-1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0.0	2016. 9. 7. 2021. 9. 6.	완도군 노화읍	전 * 규	2016 -106	2011. 9. 7. 2016. 9. 6.	2016. 9. 7. 2021. 9. 6.
2001 -224	신지면 월양리 2017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800.0	2016. 10. 4. 2021. 10. 3.	완도군 신지면	박 * 숙	2016 -107	2011. 10. 4. 2016. 10. 3.	2016. 10. 4. 2021. 10. 3.
2001 -142	완도읍 대야리 3-3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1,200.0	2016. 10. 14. 2021. 10. 13.	완도군 완도읍	곽 * 재	2016 -108	2011. 10. 14. 2016. 10. 13.	2016. 10. 14. 2021. 10. 13.
2001 -203	소안면 맹선리 8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200.0	2016. 9. 6. 2021. 9. 5.	완도군 소안면	이 * 래	2016 -109	2011. 9. 6. 2016. 9. 5.	2016. 9. 6. 2021. 9. 5.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8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이인석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고시			
내용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고시

완도군의회 의결을 얻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33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9. 08.

완 도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2회추경	1회추경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09,656,045	390,694,929	18,961,116	4.85	%
일 반 회 계	계	396,706,947	377,844,513	18,862,434	4.99	%
특 별 회 계	계	12,949,098	12,850,416	98,682	0.77	%
상 수 도 사 업		10,521,469	10,472,469	49,000	0.47	%
주 택 자 금 융 자		39,200	50,000	△10,800	△21.60	%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144,087	144,087	0	0.00	%
의 료 보 호 비		1,147,655	1,105,860	41,795	3.78	%
간 척 지 구 농 지 기 금		17,296	56,000	△38,704	△69.11	%
농 공 단 지 조 성 관 리		1,079,391	1,022,000	57,391	5.62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1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 인 (신고)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공사기간 (착수 및 준공예정일)	피승인(시행)자		승인일
					주 소	성 명	
2016 -34	신지면 대곡리 306-13 지선	육상종묘배양장 (인 수 관)	558.6	2016. 9. 19. 2017. 9. 18.	완도군 신지면	전라*도 해*수* 과학원 전* 연구소	2016. 9. 12.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1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사항 (면적 및 기간)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적 [㎡]	허 가 기 간	피 허가 자		허 가 번호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01 -226	완도읍 망석리 928-6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207.0	2016. 10. 4. 2021. 10. 3.	완도군 완도읍	완* 수* 고등학교장	2016 -110	2011. 10. 4. 2016. 10. 3.	2016. 10. 4. 2021. 10. 3.
2011 -80	약산면 우두리 956-8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203.5	2016. 10. 6. 2021. 10. 5.	완도군 약산면	방 * 애	2016 -111	2011. 10. 6. 2016. 10. 5.	2016. 10. 6. 2021. 10. 5.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7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김두현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개간고시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의거 붙임 고시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고시 제2016-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 9 . 27.

완 도 군 수



1. 사업 목적 : 농지조성
2. 사업 내용 : 개간 (전)
3. 사업의 위치 :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산123번지
4. 사업 소요액 : 19,300천원
5. 사업예정기간 : 2016.7 ~ 2018. 5
6. 사업 효과 : 임야의 농경지 전환으로 농가 소득증대
7. 사업시행자 : 임 신 숙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8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조대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8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군 도로명주소 변경 개별고시			
내용	붙임과 같이 완도군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30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김정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9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내용	<p>완도군공고 제2016- 호</p> <p>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p> <p>「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p> <p>2016년 9월 30일</p> <p>완 도 군 수</p> <p>1. 공시내용 :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p> <p>2. 공시일자 : 2016. 9. 30.</p> <p>3. 공시장소 : 군 및 읍면 게시판</p> <p>4. 공시호수 : 66호</p> <p>5. 이의신청</p> <p>가. 기 간 : 2016. 9. 30. ~ 10. 31.</p> <p>나.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p> <p>다.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p> <p>라. 방 법 :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p> <p>마. 제출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p> <p>바. 이의신청 처리</p> <p>1)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완 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제출</p> <p>2)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 의를 거쳐 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p> <p>※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p>			

201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완 도 군 수

1. 공시내용 :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 공시일자 : 2016. 9. 30.
3. 공시장소 : 군 및 읍면 게시판
4. 공시호수 : 66호
5. 이의신청
 - 가. 기 간 : 2016. 9. 30. ~ 10. 31.
 - 나.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 다.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 라. 방 법 :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마. 제출처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 바. 이의신청 처리
 - 1)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제출
 - 2)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5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처리대장

(단위 : 원)

일련 번호	소 재 지	의견제출인			결정가격	의견가격	조정가격	접수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				

가 격 열 램 부(결정가격)

2016년 6월 1일 기준 전체

지역명 : 전라남도 완도군

출력일 : 2016년 9월 30일

일련 번호	소재지	동 번호	전체면적(m ²)		공시면적(m ²)		용 도 지	건 물 용	건 물 구	가격	비고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					
1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5	1	308.00	52.87	308.00	52.87	자연	단독	철근	41,200,000	
2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86-1	2	158.00	221.49	125.55	176.00	2주	주상	철근	100,000,000	
3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910-5	1	291.00	133.16	291.00	133.16	1주	단독	철근	98,300,000	
4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71	1	151.00	343.16	62.62	142.32	일상	주상	철근	88,100,000	
5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79	1	592.00	70.00	592.00	70.00	자연	단독	철근	44,600,000	
6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15	1	630.00	97.57	630.00	97.57	준공	단독	철근	78,500,000	
7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610-6	1	1,157.00	118.92	618.00	118.92	계관	단독	경철	56,700,000	
8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230-1	1	1,634.00	260.68	660.00	260.68	자보	단독	철근	161,000,000	
9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230-1	2	1,634.00	35.58	660.00	35.58	자보	단독	목구	25,500,000	
10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98-1	1	644.00	88.04	644.00	88.04	자보	단독	철근	59,100,000	
11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789-3	1	660.00	99.57	660.00	99.57	생관	단독	철근	66,000,000	
12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137-1	1	205.00	78.75	205.00	78.75	계관	단독	철근	36,000,000	
13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171-2	1	278.00	105.87	278.00	105.87	계관	단독	경철	45,500,000	
14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513	1	735.00	95.94	660.00	95.94	계관	단독	철근	50,400,000	
15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532	5	5,231.00	252.00	460.00	252.00	계관	단독	경철	95,600,000	
16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696-2	1	271.00	95.61	271.00	95.61	계관	단독	목구	52,700,000	
17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38	1	1,857.00	86.85	660.00	86.85	농림	단독	철근	42,700,000	
18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27-1	1	126.00	75.36	126.00	75.36	계관	단독	철근	48,900,000	
19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52-17	1	660.00	99.96	660.00	99.96	생관	단독	경철	35,300,000	
20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582-1	1	370.00	99.16	370.00	99.16	자보	단독	철근	65,300,000	
21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171	1	247.00	65.46	247.00	65.46	자보	단독	경철	27,900,000	
22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666	1	457.00	89.68	457.00	89.68	자보	단독	벽돌	42,000,000	
23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 519	2	654.00	90.36	654.00	90.36	자연	단독	철근	58,300,000	
24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196-1	1	471.00	128.48	471.00	96.48	계관	단독	목구	63,500,000	
25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67-3	1	1,428.00	221.19	660.00	221.19	자보	단독	경철	56,500,000	
26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247-6	1	231.00	66.00	231.00	66.00	자보	단독	경철	27,800,000	

가 격 열 램 부(결정가격)

2016년 6월 1일 기준 전체

지역명 : 전라남도 완도군

출력일 : 2016년 9월 30일

일련 번호	소재지	동 번호	전체면적(m ²)		공시면적(m ²)		용 도 지	건 물 용	건 물 구	가격	비고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					
27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산 106-46	1	442.00	195.89	484.00	195.89	농림	단독	철근	124,000,000	
2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8-1	1	558.00	95.92	558.00	95.92	생관	단독	경철	44,600,000	
29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303-4	1	542.00	137.71	542.00	111.50	계관	단독	경철	50,000,000	
30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416-1	1	422.00	97.92	422.00	97.92	계관	단독	철근	54,000,000	
31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165-1	1	600.00	123.00	600.00	123.00	계관	단독	경철	58,600,000	
32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968	1	676.00	84.87	676.00	84.87	계관	단독	경철	44,800,000	
33	완도군 신지면 신리 618	1	980.00	177.85	980.00	177.85	계관	다가구	철근	123,000,000	
34	완도군 신지면 신리 1131-3	1	622.00	149.58	622.00	149.58	생관	단독	철근	92,800,000	
35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280	1	185.00	47.70	185.00	47.70	계관	단독	경철	19,800,000	
36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747-4	1	1,989.00	129.14	603.00	126.64	농림	단독	철근	81,300,000	
37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528-2	1	247.00	91.68	247.00	91.68	계관	단독	철근	48,000,000	
38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398	1	1,646.00	95.88	646.00	95.88	생관	단독	경철	40,900,000	
39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410-9	1	625.00	99.49	625.00	99.49	자보	단독	철근	60,700,000	
40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693-3	1	665.00	97.98	665.00	97.98	계관	단독	철근	54,900,000	
41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316	1	387.00	106.02	387.00	106.02	계관	단독	경철	50,900,000	
42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605-1	1	181.00	65.73	181.00	65.73	계관	단독	경철	31,300,000	
43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607	1	255.00	94.32	255.00	94.32	계관	단독	경철	44,700,000	
44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948-1	1	660.00	149.64	660.00	149.64	계관	단독	목구	89,200,000	
45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214-1	1	1,160.00	94.75	473.75	94.75	생관	단독	경철	45,300,000	
46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400-1	1	707.00	18.00	353.50	18.00	계관	단독	경철	9,770,000	
47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400-1	2	707.00	18.00	353.50	18.00	계관	단독	경철	9,770,000	
48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400	1	353.00	103.40	353.00	103.40	계관	단독	철근	77,100,000	
49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1070	1	524.30	99.18	524.30	99.18	생관	단독	목구	62,500,000	
50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353-1	1	660.00	144.98	660.00	144.98	계관	단독	목구	81,300,000	
51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467	1	433.00	73.74	433.00	73.74	계관	단독	경철	30,000,000	
52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1175	2	500.00	21.00	500.00	21.00	생관	단독	목구	17,000,000	
53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230	1	781.00	74.65	781.00	74.65	계관	단독	경철	28,600,000	

가 격 열 램 부(결정가격)

2016년 6월 1일 기준 전체

지역명 : 전라남도 완도군

출력일 : 2016년 9월 30일

일련 번호	소재지	동 번호	전체면적(m ²)		공시면적(m ²)		용 도 지	건 물 용	건 물 구	가격	비고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 건물연면					
54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83	1	112.00	82.60	112.00	82.60	계관	단독	경철	43,100,000	
55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071-1	1	496.00	480.83	301.42	292.19	계관	주상	철근	182,000,000	
56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787-2	2	446.00	137.32	446.00	137.32	생관	단독	철골	75,000,000	
57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522-1	1	490.00	99.27	490.00	99.27	계관	단독	경철	40,500,000	
58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951-10	1	292.00	107.54	292.00	69.04	생관	단독	철근	38,700,000	
59	완도군 보길면 중동리 199-7	1	52.00	99.54	52.00	99.54	계관	단독	철근	65,800,000	
60	완도군 보길면 중동리 201-10	1	660.00	130.75	660.00	130.75	계관	단독	철근	90,700,000	
61	완도군 보길면 중동리 203	1	400.00	99.80	400.00	99.80	계관	단독	철근	57,400,000	
62	완도군 보길면 중동리 501-2	1	731.00	466.59	399.64	255.09	계관	단독	철근	143,000,000	
63	완도군 보길면 중동리 999	1	506.00	127.26	506.00	127.26	계관	단독	철근	72,600,000	
64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1-4	3	1,653.00	231.84	635.00	231.84	계관	단독	철근	137,000,000	
65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687-7	1	410.00	121.88	410.00	121.88	계관	단독	철근	60,200,000	
66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931-1	1	1,521.00	93.39	660.00	93.39	계관	단독	경철	35,600,000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1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39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			
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면허 처분 공고 안 1부. 끝.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월 1일

완 도 군 수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1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39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안 1부. 끝.</p>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품종	포기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포기 사유	포기일자
					주소	성명		
계	10건		474.2					
13180	패류	전복 등	5.0	소안 횡간	소안 횡간	횡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71번(전복 등 5ha)포기 패류(전복 등) 7ha대체개발
13530	패류	전복 등	6.0	소안 횡간	소안 횡간	횡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71번(전복 등 6ha)포기 패류(전복 등) 7ha대체개발
12786	해조류	김 등	60.0	소안 소진	소안 소진	소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6번(김 등 60ha)포기 해조류(김 등) 60ha대체개발
12947	해조류	미역 등	18.0	소안 소진	소안 소진	소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67번(미역 등 18ha)포기 해조류(미역 등) 16.5ha대체개발
12975	패류	전복 등	3.0	소안 소진	소안 소진	소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68번(전복 등 3ha)포기 패류(전복 등) 3ha대체개발
13565	해조류	김 등	29.0	소안 소진	소안 소진	소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9번(김 등 29ha)포기 해조류(김 등) 29ha대체개발
12269	해조류	김 등	148.2	소안 비자	소안 비자	비자 (비동외2)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20번(김 등 148.2ha)포기 해조류(김 등) 148.2ha대체개발
11036	해조류	김 등	100.0	소안 비자	소안 비자	비자 (비동외1)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21번(김 등 100ha)포기 해조류(김 등) 100ha대체개발
11033	해조류	김 등	100.0	소안 비자	소안 비자	비자 (비동외1)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22번(김 등 100ha)포기 해조류(김 등) 100ha대체개발
13159	패류	전복 등	5.0	소안 비자	소안 비자	비자 (비동외1)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01. 본 승인 173번(전복 등 5ha)포기 패류(전복 등) 5ha대체개발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 위 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11건				497.7				
13901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횡간	25.0	소안 횡간	횡 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18
13902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소안 횡간	7.0	소안 횡간	횡 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171
13903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소안 횡간	4.0	소안 횡간	횡 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172
13904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소진	60.0	소안 소진	소 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16
13905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소안 소진	16.5	소안 소진	소 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67
13906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소안 소진	3.0	소안 소진	소 진 어촌계	2016. 09. 01. 2026. 08. 30	본 168
13907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비자	29.0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비동 외 1)	2016. 09. 01. 2026. 08. 30	본 19
13908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비자	148.2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비동외 2)	2016. 09. 01. 2026. 08. 30	본 20
13909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비자	100.0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비동 외 1)	2016. 09. 01. 2026. 08. 30	본 21
13910	해조류	부류망홍식	김 등	소안 비자	100.0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비동 외 1)	2016. 09. 01. 2026. 08. 30	본 22
13911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소안 비자	5.0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비동 외 1)	2016. 09. 01. 2026. 08. 30	본 173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05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강민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0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p>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단속된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공 고 대 상 :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4 403동 801호 전*준외 8인</p> <p>나. 서류의 명칭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 08. 01 ~ 08. 31까지 단속분)</p> <p>다. 공 고 기 간 : 2016년 9월 05일 ~ 2016년 9월 20일 (15일간)</p> <p>라. 근 거 규 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p> <p>마. 공 고 방 법 : 시 ? 군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p> <p>★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p> <p>2.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완도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061-550-554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 고 대 상 :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4 403동 801호 전*준외 8인
(붙임 내역서 참조)
- 공 고 내 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16. 8. 1. ~ 2016. 8. 31. 우편 반송분)
- 공 고 기 간 : 2016. 9. 5. ~ 2016. 9. 20. (15일간)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완도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550-5549)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 16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경제산업과 [(061) 550-55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일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016년 9 월 5 일

완 도 군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16년 8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반송 목록

연번	발송일자	반송일자	부과금액	부과명	차량번호	소유자	단속장소	단속일시	반송사유	주소	비고
1	2016-08-02	2016-08-09	32,000	사전부과	14보62**	전*준	터미널 앞	2016-07-27 18:18분	폐문부재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88번길 **	
2	2016-08-02	2016-08-09	32,000	사전부과	18머31**	안*형	터미널 앞	2016.07.27 15:05분	폐문부재	대구시 동구 아양로 9길 **	
3	2016-08-02	2016-08-11	32,000	사전부과	25가36**	강*민	터미널 앞	2016.07.27 20:04분	폐문부재	순천시 유동1길 **	
4	2016-08-05	2016-08-11	32,000	사전부과	11오54**	김*기	터미널 앞	2016.08.01 19:16분	폐문부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5	2016-08-08	2016-08-16	32,000	사전부과	47부66**	김*희	터미널 앞	2016.08.05 19:24분	폐문부재	목포시 석현로 42 **	
6	2016-08-08	2016-08-18	32,000	사전부과	25가36**	강*민	터미널 앞	2016.08.05 19:54분	폐문부재	순천시 유동1길 **	
7	2016-08-11	2016-08-18	32,000	사전부과	47부66**	김*희	터미널 앞	2016.08.08 19:08분	폐문부재	목포시 석현로 42 **	
8	2016-08-19	2016-08-28	32,000	사전부과	88너99**	박*복	터미널 앞	2016.08.18 20:10분	폐문부재	광주시 북구 서하로245번길**	
9	2016-08-28	2016-08-30	32,000	사전부과	52고08**	김*웅	터미널 앞	2016.08.03 19:25분	폐문부재	전나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13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0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p> <p>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p>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13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1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포기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p>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 월 13일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품종	포기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포기 사유	포기일자
					주소	성명		
계	5건		65.0					
13844	해조류	미역 등	16.0	완도 정도	완도 정도	정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 승인 32번(미역 등 16ha)포기 해조류(미역 등) 75ha대체개발
13845	해조류	미역 등	20.0	완도 정도	완도 정도	정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 승인 32번(미역 등 20ha)포기 해조류(미역 등) 75ha대체개발
13846	해조류	김 등	20.0	완도 정도	완도 정도	정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 승인 32번(미역 등 20ha)포기 해조류(미역 등) 75ha대체개발
13702	패류	바지락 등	6.0	완도 대야 2	완도 대야2	대야2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 승인 98번(바지락 등6ha)포기 패류(바지락 등) 12ha대체개발
11322	패류	전복 등	3.0	완도 망남	완도 망남	망남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 승인 121번(전복 등 3ha)포기 패류(전복 등) 3ha대체개발
		이	하	여	백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 위 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3건				90.0				
13915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완도 정도	75.0	완도 정도	정 도 어촌계	2016. 09. 13. 2026. 09. 12.	본 32
13916	패류	살포식	바지락등	완도 대야 2	12.0	완도 대야2	대야 2 어촌계	2016. 09. 13. 2026. 09. 12.	본 98
13917	패류	투석식	전복 등	완도 망남	3.0	완도 망남	망 남 어촌계	2016. 09. 13. 2026. 09. 12.	본 121
		이	하	여	백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13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1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한정 어업면허 처분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한정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p>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09월 13일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한정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 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품 종	포기 면적 (ha)	어장위치	어 업 권 자		포기 사유	포기일자
					주 소	성 명		
계	2건		91.0					
13861	해조류	미역 등	71.0	완도 죽청	완도 죽청	죽 청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31번(미역 등 71ha)포기 해조류(미역등)77.5ha 대 체 개 발
13705	패류	전복 등	20.0	완도 죽청	완도 죽청	죽 청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13. 본131번(전복 등 20ha)포기 패류(전복 등)20ha 대 체 개 발

□ 한정어업 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위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2건				97.5				
13918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완도 죽청	77.5	완도 죽청	죽 청 어촌계	2016.09.13 2026.09.12	본 31
13919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완도 죽청	20.0	완도 죽청	죽 청 어촌계	2016.09.13 2026.09.12	본 131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9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2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공고			
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 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면허 처분내역공고(안)1부. 끝.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월 29일

완 도 군 수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 위 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5건				74.0				
13928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고금 넙도	3.0	고금 넙도	넙 도 어촌계	2016. 9. 29 2026. 9. 28.	본 55
13929	패류	연승수하식	가리비 등	고금 도남	2.0	고금 도남	도 남 어촌계	2016. 9. 29 2026. 9. 28.	본 115
13930	패류	연승수하식	굴 등	고금 항동	10.0	고금 항동	항 동 어촌계외 1	2016. 9. 29 2026. 9. 28.	본 105
13931	패류	투석식	굴 등	고금 내동	3.0	고금 내동	내 동 어촌계	2016. 9. 29 2026. 9. 28.	본 119
2493	마을	도수, 나잠	패류, 갯지렁이	고금 칠인	56.0	고금 칠인	칠 인 어촌계	2016. 9. 29 2026. 9. 28.	본 196
		이	하	빈	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9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2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하고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p>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9 월 29일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품종	포기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포기 사유	포기일자
					주소	성명		
계	10건		76.0					
13047	해조류	매생이 등	4.5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91번(매생이 4.5ha)포기 해조류(매생이 등) 4.5ha대체개발
12916	해조류	매생이 등	4.0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92번(매생이 4ha)포기 해조류(매생이 등) 2ha대체개발
12158	해조류	미역 등	20.0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53번(미역 등 20ha)포기 해조류(미역 등) 39ha대체개발
11059	패류	굴 등	10.0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54번(굴 등 10ha)포기 해조류(미역 등) 27ha대체개발
11415	복합	미역, 가리비 등	5.0	고금 봉성	고금 봉성	봉성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58번(미역, 가리비 등 5ha)포기, 미역 등 7.5ha 포기 해조류(미역 등) 24ha대체개발
12157	해조류	미역 등	7.5	고금 봉성	고금 봉성	봉성 어촌계	대체개발	24ha대체개발
12030	패류	전복 등	2.0	고금 봉성	고금 봉성	봉성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159번(전복 등 2ha)포기 패류(전복 등) 2ha대체개발
12633	패류	전복 등	5.0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 160번(전복 등 5ha)포기, 전복 등 3ha 포기 패류(전복 등) 8ha대체개발
13049	패류	전복 등	3.0	고금 널도	고금 널도	널도 어촌계	대체개발	8ha대체개발
11814	복합	미역, 전복 등	15.0	고금 도남	고금 도남	도남 어촌계	대체개발	2016. 09. 29. 본 승인177번(미역, 전복 등 15ha)포기 복합(미역, 전복 등) 15ha대체개발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 위 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8건				121.5				
13920	해조류	지주망홍식	매생이 등	고금 넓도	4.5	고금 넓도	넓 도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91
13921	해조류	지주망홍식	매생이 등	고금 넓도	2.0	고금 넓도	넓 도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92
13922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고금 넓도	39.0	고금 넓도	넓 도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53
13923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고금 넓도	27.0	고금 넓도	넓 도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54
13924	해조류	연승수하식	미역 등	고금 봉성	24.0	고금 봉성	봉 성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58
13925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고금 봉성	2.0	고금 봉성	봉 성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159
13926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고금 넓도	8.0	고금 넓도	넓 도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160
13927	복합	연승수하식	미역, 전복 등	고금 도남	15.0	고금 도남	도 남 어촌계	2016. 09. 29. 2026. 09. 28.	본 177
		이	하	빈	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9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2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한정어업면허 처준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 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한정어업면허 처분 공고(안) 1부. 끝.</p>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09월 29일

완 도 군 수

한정어업 면허 처분내역

어업 한정면허 처분내역

면허 번호	어업의 종 류	어업의 방 법	품 종	어장위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주 소	성 명		
계	1건				5.0				
13932	패류	연승수하식	굴 등	고금 장풍	5.0	고금 장풍	장 풍 어촌계	2016.09.29 2026.09.28	본 106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9-29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43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내용	<p>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에 게재하고자 합니다.</p> <p>붙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부. 끝.</p>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공고

수산업법 제14조 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완 도 군 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내역(완도)

허가 번호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면적 (ha)	면허기간		어장 위치	어업권자	
						당초	연장		주소	성명
계	1건				2.0					
2016- 77	2265	마을	도수, 나잠	해조류, 패류	2.0	06.11.24 16.11.23	16.11.24 26.11.23	완도 대야 1	완도 대야 1	대야 1 어촌계